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세자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 통보
-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급고 예탁 근거 신설 (안 제8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